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, 젓갈류 등 미가공식품과 커피,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24. ~ 12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분류표”를 “분류표(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 산물, 수산 물 또는 임 산물과 단 순가공 식 료품	0409	① 천연꿀
	0410	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
	1212	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(核)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(산채류를 포함한다)
	2501	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
		⑤ 데친 채소류·김치·단무지·장아찌·젓갈류·계장·두부·메주·간장·된장·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
	1209	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
		⑦ 쌀에 인산추출물·아미노산 등 식품첨가

	<p>물을 첨가·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(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),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</p>
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) 기획재정부령 제918호(2022.6.28.)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었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된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 제918호(2022.6.28.)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기획재정부령 제918호(2022.6.28.)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.

